

---

#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2018. 12.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감사실





## 1. 감사 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2. 감사 기간 및 인원

### 기 간

- 예비감사 : 2018. 11. 19. ~ 11. 23.(5일간)
- 본 감 사 : 2018. 11. 26. ~ 11. 30.(5일간)

### 인 원 : 청렴감찰부장 등 6명

## 3. 감사범위 : 2015. 12. 3. 이후 수행업무 전반

## 4. 감사중점

### ○ 교육 행정 및 지원 분야

- 교육원의 사업계획, 중장기계획 수립의 적정성
- 교수 평가방법 등의 적정성
- 교육원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생 만족도 추이 분석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교육시설 및 청사관리의 적정성
- 교재개발(원고, 검토, 인쇄,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등

### ○ 교육운영 분야

- 중부교육장 운영 및 교과과정의 적정성
- 안전공학, 건설·관리, 산업보건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신규 교과과정 개설 및 폐강에 관한 사항
- 이러닝교육 과정 운영의 적정성
- 각종 실습장비 운영의 적정성
- 자체 직원의 교육운영관리의 적정성 등



## 1. 처분요구사항

### ○ 신분상조치 : 2건(4명)

- 경고 1건(2명)
  - 경영 분야 1건(2명)
- 주의 1건(2명)
  - 안전보건분야 1건(2명)

### ○ 행정상조치 : 11건

- (모범) 실시간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인력 및 예산절감 등 2건
- (개선) 겸임교수 수당 지급 근거 미흡 등 3건
- (통보) 강사풀 구성 및 운영 미흡 등 5건
- (시정/회수) 외부장의 여비 중 일비와 식비 이중 수령 1건

### ○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시정(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모범	시정	개선	통보	현지 조치
총건수 (인원)	신분 인원	재정 금액	소계 (금액)	추징 (금액)	회수 (금액)							
13 (4)	4	120	120	-	120	1 (2)	1 (2)	2	1	3	5	-

※ 주의/개선 1건 중복(실습교육장 안전보건조치 부적정)

## 2. 처분요구 내역

연번	일련번호	처분요구내용	관련자		지 적 내 용
			소속(부서)	직급.성명	
1	1-18-01	통보 (모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산업안전보건 교육원장	실시간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인력 및 예산 절감
2	1-18-02	통보 (모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산업안전보건 교육원장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 및 안정적 교육서비스 지원
3	1-18-03	통보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산업안전보건 교육원장	강사풀 구성 및 운영 미흡
4	1-18-04	개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산업안전보건 교육원장	겸임교수 수당 지급 근거 미흡
5	1-18-05	개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산업안전보건 교육원장	교육과정 강사 운영 불합리
6	1-18-06	주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부	○급 ○○○	실습교육장 안전보건조치 부적정
		주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부	○급 ○○○	
		개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산업안전보건 교육원장	
7	1-18-07	통보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산업안전보건 교육원장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 시기 불합리
8	1-18-08	통보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산업안전보건 교육원장	안전보건교육훈련 경진대회 우수 강사 활용 미흡
9	1-18-09	통보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산업안전보건 교육원장	이러닝교육 시스템 접근관리 불 합리
10	1-18-10	통보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산업안전보건 교육원장	이러닝컨텐츠 권리보호조치 미 흡
11	1-18-11	경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부	○급 ○○○	노트북 부품교체 및 외부반출 절차 부적정
		경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부	○급 ○○○	
12	1-18-12	시정 (회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산업안전보건 교육원장	외부강의 여비 중 일비와 식비 이중 수령



직 위	직.성명	담 당 업 무	비 고
부장	강 철 호	○ 감사업무 총괄	감사반장
차장	유 재 흥	○ 건설경영교육부, 산업보건교육부 소관 업무	
차장	최 혁 재	○ ○○부 소관 업무 ○ 감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차장	박 성 훈	○ 교육기획부, 교육개발평가팀 소관 업무	
차장대우	송 인 회	○ 안전공학교육부 소관 업무	
과장	김 용 표	○ ○○부 소관 업무	

[붙임]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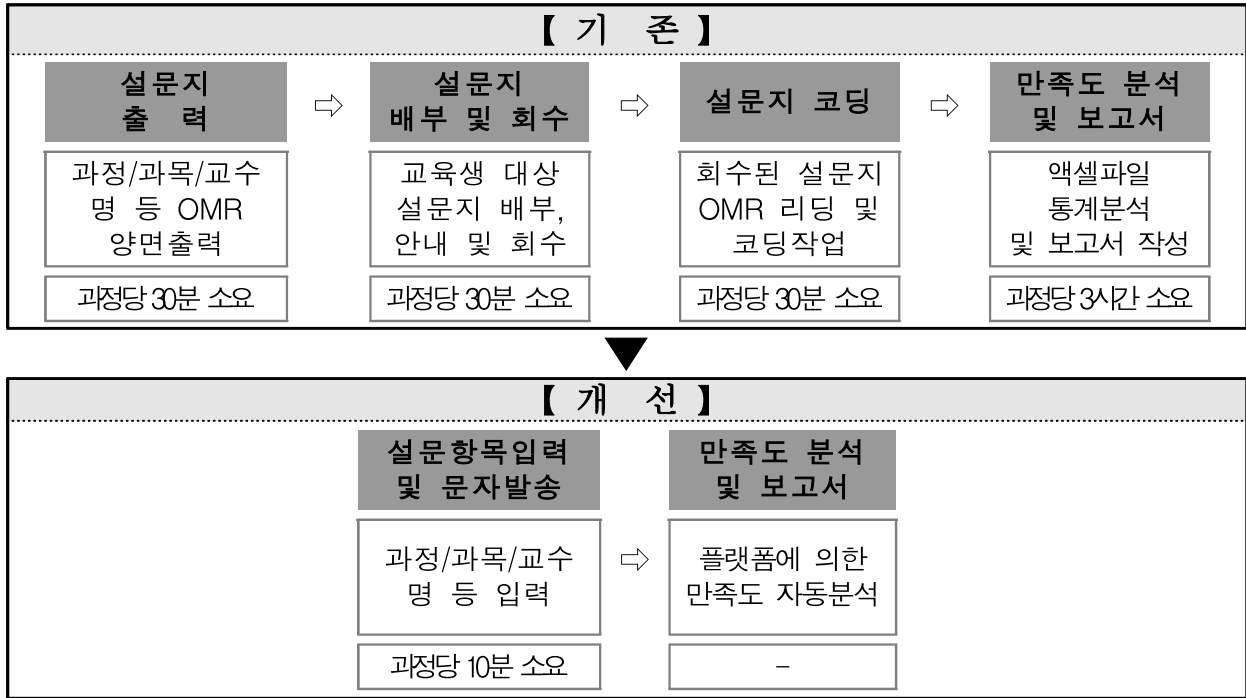
일련번호 1-18-01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련자(소속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상동)  
제목 실시간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인력 및 예산절감  
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는 교육 실시 이후 설문지를 통하여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학업성취도, 현업적용도(이하 ‘만족도’라 한다) 설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교육 이수인원 약 12,000여명에 대한 설문지 출력, 배부 및 회수, OMR 리딩 및 분석 등 평가분석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데이터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평가결과가 담당교수 및 운영자에게 즉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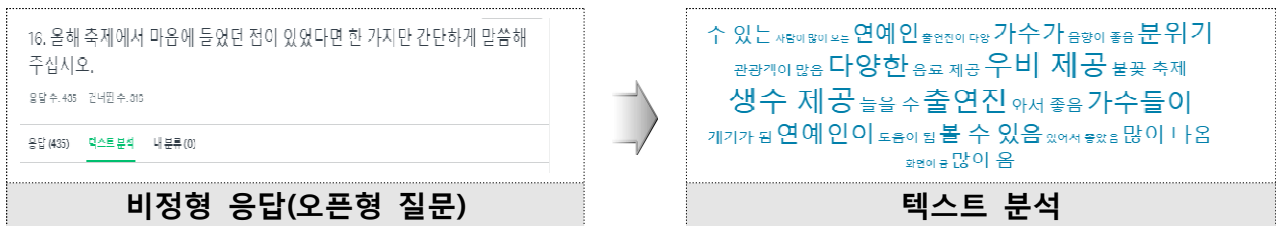
이에, 교육원에서는 만족도 설문조사 전 과정을 스마트폰에 기반한 설문플랫폼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존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하였고, 교육생의 설문 응답과 동시에 통계분석이 가능한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설문분석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림 1】 만족도 설문조사 시스템 개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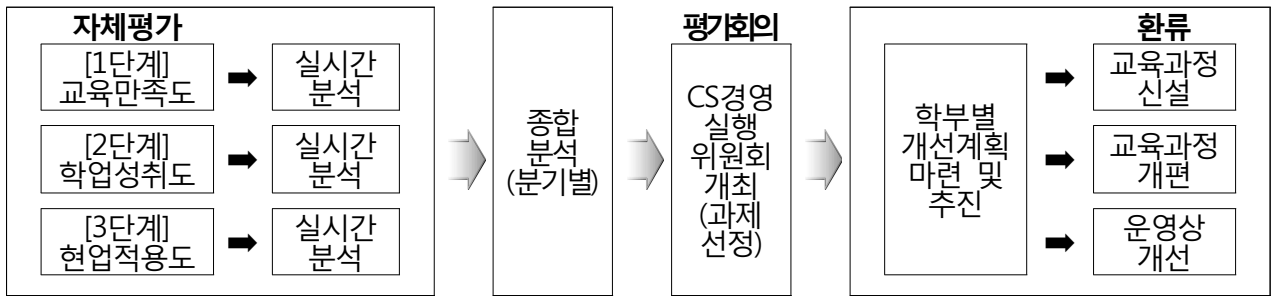
또한, 고객의 소리(이하 ‘VOC’라 한다)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비정형 빅데이터로 수집되는 고객의 소리에 대해 건별 대응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플랫폼을 통한 텍스트 분석으로 주요 키워드의 빈도에 따라 텍스트 크기를 가시화하도록 변경하였고,

【그림 2】 VOC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개선 현황



VOC 의견에 대해 CS경영실행위원회와 연계하여 분기별 핵심과제를 선정, 학부별 개선계획 마련 및 실행 후 다음 분기의 평가회의에서 진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로 환류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3】 VOC 환류 프로세스



이러한 노력으로 설문지 배부, 회수, 코딩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행정인력 1명\*과 예산 19,574천 원\*\*을 절감하였고, 체계적인 교과과정 환류체계를 마련하였다.

\* 설문지 배부·회수, 코딩 및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인력 215M/D(약 1명) 절감

\*\* OMR용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및 OMR 판독기 등 구매에 소요되는 20,801천원 대비 예산 19,547천원 절감효과(플랫폼 구매비용 1,228천원)

**관계기관 의견** 산업안전교육원에서는 실시간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선호 과목 확대·심화, 만족도가 높은 외부강사풀 마련 등 VOC에 대한 환류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스마트폰 기반, 실시간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인력 및 예산절감에 기여한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자체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통보/모범)

※ 해당 사례 홍보는 감사실에서 실시예정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라.통보(모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 통 보(모 범)

일 련 번 호 1-18-02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 련 자 (소 속 기 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상동)

제 목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 및 안정적 교육 서비스 지원

내 용

공단과 육군간 업무협약에 따른 「안전한 육군 만들기 추진」으로 인해 '18년 1분기부터 육군 간부직, 특수직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온라인교육 신청자가 급증하였다.

특히, '18.2.27.에는 동시 접속자가 300명 이상 몰려 허용수준인 200명을 상회하면서 네트워크 회선 과부하 및 이러닝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하였다.

한편, '18년 하반기부터 육군 특수직위 9.3만 명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부하에 대한 서버 확충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교육원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하였다.

\*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의 자원(서버 등)을 빌려 쓰고 사용량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교육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클라우드 선도화 사업 중 공공기관 맞춤형 클라우드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보조금(2,800만 원)을 확보하여 자체 예산은 금년도에 45.7만 원만 부담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보조금 및 자체예산 집행계획**

구분	사용기간	월별 부과액	보조금	자체 예산
'18	9월	'18. 8.16 ~ 9.15.	3,216,840	-
	10월	'18. 9.16 ~ 10.15.	3,847,360	-
	11월	'18.10.16 ~ 11.15.	4,075,720	228,360
	12월	'18.11.16 ~ 12.15.	4,075,720	228,360
'19	1월	'18.12.16 ~ '19. 1.15.	4,075,720	228,360
	2월	'19. 1.16 ~ 2.15.	4,075,720	228,360
	3월	'19. 2.16 ~ 3.15.	4,075,720	228,360
	3.5월	'19. 3.16 ~ 3.31.	2,037,860	114,180
	4월	'19. 4. 1 ~ 4.30.	4,075,720	4,075,720
	5월	'19. 5. 1 ~ 5.31.	4,075,720	4,075,720
	6월	'19. 6. 1 ~ 6.30.	4,075,720	4,075,720
	7월	'19. 7. 1 ~ 7.31.	4,075,720	4,075,720
	8월	'19. 8. 1 ~ 8.31.	4,075,720	4,075,720
9월	'19. 9. 1 ~ 9.15.	2,037,860	-	2,037,860
<b>계</b>		<b>51,897,120</b>	<b>28,224,680</b>	<b>23,672,440</b>

또한, 클라우드 도입으로 예산문제 해결과 함께 서버 및 트래픽 부하 분산을 통한 안정적 교육 지원과 보안성 강화, 물리적 서버 대비 1.4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표 2】 물리적 서버 대비 예산절감 효과**

(단위 : 백만원)

구분	1년 기준 비용		5년 기준 비용					
	서버	유지	계	1년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물리적서버	123	49	354	159	49	49	49	49
클라우드	24	17	210	42	42	42	42	42

관계기관 의견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을 통하여 예산 절감과 안정적 교육 운영에 기여한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자체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통보/모범)

※ 해당 사례 홍보는 감사실에서 실시예정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라.통보(모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강사 결과 처분 요구서

## 통 보

일련번호 1-18-03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련자(소속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상동)

제목 강사풀 구성 및 운영 미흡

내용

교육원은 안정적인 강의지원과 교육과정 자문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제7조와 「교육원 업무처리지침」 제28조에 따라 사업장, 학계, 유관단체 및 공단 퇴직자, 외부강사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겸임교수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교육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부터 제38조의2에 따라 매년 외부 및 내부강사(자체강사)를 강사풀로 구성하여 교과목과 관련되는 해당 분야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실장의 추천으로 외부강사 및 자체강사를 선정·위촉하여 교육과정에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강사활용은 교수, 겸임교수, 자체강사, 외부강사 순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원은 2017년에 강사활용을 위해 2016년 위촉 강사 명단을 활용하여 총 549명의 강사풀을 구성하였고, 2018년도에는 2016년~2017년 위촉 강사 명단을 활용하여 총 461명의 강사풀을 구성하였다.

**【표 1】 강사풀 구성 현황**

년도	계	겸임교수	자체강사	외부강사
2017년	549명	12명	216명	321명
2018년	461명	12명	165명	284명

\* 자료: 교육원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원 시행 교육의 강사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 실시한 강의 4,109건(교육과목수) 중 2,267건을 위촉강사로 활용하였는데, 이 중 1,118건(49.3%)은 강사풀 명단(겸임교수 포함)에서 위촉하여 활용한 반면, 나머지 1,149건(50.7%)은 강사풀에 구성되지 않은 외·내부(자체)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에 실시한 강의 3,452건(교육과목수) 중 1,461건을 위촉강사로 활용하면서, 강사풀 명단에서 1,152건(78.9%)을 위촉하여 활용한 반면, 나머지 309건(21.1%)은 강사풀에 구성되지 않은 외·내부(자체)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위촉강사 활용교육 중 강사풀 인력 활용 현황**

년도	계			외부강사(겸임교수 포함)			내부(자체)강사		
	계	강사풀	강사풀 외	소계	강사풀	강사풀 외	소계	강사풀	강사풀 외
계	3,728	2,270 (60.9%)	1,458 (39.1%)	2,196	1,538	658	2,267	732	800
2017년	2,267	1,118 (49.3%)	1,149 (50.7%)	1,195	737	458	1,072	381	691
2018년	1,461	1,152 (78.9%)	309 (21.1%)	1,001	801	200	1,195	351	109

\*자료 : 교육원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와 같이, 매년 교육원에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위촉 강사풀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전년도 강의실적 자료만을 활용하고 강사풀을 구성하는 등 우수한 강사풀 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강사풀을 구성하고도 최근 2년간 평균 60% 정도만 강사풀에 구성된 강사를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나머지 40%는 수시(임의)로 선정하여 활용하는 등 강사풀 활용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원 업무담당자는 현재 위촉강사 선정 시에 강사풀 명단을 우선하기 보다는 담당 과목 교수의 임의 추천을 받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과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위촉 강사풀 구성 시 우수한 외·내부강사를 구성하고, 강사풀을 기준으로 교육과정별 위촉강사 선정하여 활용하는 등 강사풀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강사풀 구성을 보다 내실화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2019년에 교육과정에 우수한 강사풀을 구성될 수 있도록 현재 구성된 강사풀 명단 등을 검토하여 업데이트 하고, 위촉강사 선정 시 강사풀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조치근거 : 감사결과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 조치 라. 통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 개 선 요 구

일 련 번 호 1-18-04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련자(소속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상동)

제 목 겸임교수 수당 지급 기준 근거 미흡

내 용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겸임교수제)에 따르면 안정적인 강의지원과 교육과정 자문 등을 위해 우수한 외부강사 중 일부를 겸임교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육원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6조(수당 등 지급)제1항에 따르면 겸임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겸임교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겸임교수로 위촉된 인원은 12명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는 분기별로 겸임교수 강의 시간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겸임교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 지급기준: 겸임교수별 분기당 8시간 강의 기준 40만원 정액 지급  
(8시간 미만은 시간당 5만원씩 차감 지급)

그 지급 기준은 2009년 겸임교수 위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교육지원실-2543호(2009.10.13.) 「겸임교수 위촉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하지만, 매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약 9년이 경과한 위원회 개최 결과 문서를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교육원에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강사료 지급기준 등과 같이 겸임교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지침 등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겸임교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겸임교수 수당 지급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지침 등에 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나.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 개 선 요 구

일 련 번 호 1-18-05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련자(소속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상동)

제 목 교육과정 강사 운영 불합리

내 용

「교육원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2조(교수의 강의기준) 제1항에 따르면 ○○실장을 제외한 교육원 교수는 연간 기준 28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원장은 전년도 교육결과 강의 시간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수에게는 부전공과목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연구 과제를 부여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수의 강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며, 교육과목별 특성에 따라 같은 과목에 2명 이상의 교수(외래강사 등 포함)가 참여한 시간은 교수 단독 강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8.11월 기준 교수별 강의 현황

(단위: 시간)

성명	합계	단독	2명 이상	단독 강의 비율
강	327	175	152	53.5
권	384	210	174	54.7
김	319	249	70	78.1
김	319	176	143	55.2
김	320	81	239	25.3
변	317	184	133	58
신	397	123	274	31
양	378	129	249	34.1
오	325	181	144	55.7
이	254	80	174	31.5
임	346	178	168	51.4
정	247	40	207	16.2
조	344	186	158	54.1
최	288	119	169	41.3
최	275	153	122	55.6
허	305	180	125	59
황	237	103	134	43.5
합계	5,391	2,556	2,835	47.4

자료 : 교육원 제공 자료

교육원에서는 같은 과목에 2명 이상의 강사가 참여했다라도 교수 강의 실적 시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는 교육업적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물론, 실습·사례발표·분반 운영 등 교육과목 특성 상 2명 이상의 강사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강의식 교육에 교육원 교수와 외래강사가 함께 강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일부 교육과목은 강의가 아닌 교육 참관, 교육생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위해 강사 2명을 배정한 교육과정\*도 있었다.

\* (예) 과정명: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실무, 추락재해예방 시스템 등

따라서, 실제 강의를 하지 않고 교육 참관만으로 교육시간을 인정받거나 교육시간표 상 불필요한 강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 의견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강의가 아닌 교육 참관, 질의응답 등으로 교육시간 실적을 인정받거나 교육시간 표 상 불필요한 강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나.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주의 및 개선요구

일련번호	1-18-06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교육원) (주의)○급 A(산업안전보건교육원 ○○부)
관련자(소속기관)	(주의)○급 B(산업안전보건교육원 ○○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상동)
제목	실습교육장 안전보건조치 부적정
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른 **직무교육**, 산안법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의한 안전검사 수행 검사원의 역량강화 및 자격 부여를 위한 **양성교육**, 산안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의한 안전보건관계자 및 관리감독자의 전문분야별 실무능력배양을 위한 **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습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원 실습교육장은 실습교육 시 위험기계 등 실습장비에 충돌 및 끼임, 유해물질 누출, 실습장내 이동 중 넘어짐, 실습장비 충전부 감전위험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2018년 11월 교육원 종합감사기간 중 실습교육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보니, 일부 실습교육장에서 실습 교육 중 ① 실습장비에 충돌위험(크레인 검사원 실습), ② 교육 종료 후 교육기자재 및 전선 등의 정리정돈을 하지 않아 교육 중 넘어질 위험(전 실습교육장), ③ 교육생 안전 이동통로, 안전대기장소를

표기하지 않아 부딪힘 및 넘어질 위험(전 실습교육장), ④ 위험정보 미표시[분전반 및 충전부에 감전위험 경고표시 미부착, 위험물질 저장용기에 물질명, 위험문구 등 표지 미부착(전 실습교육장)] 등 위험요인이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교육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습교육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 ① 실습교육장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교육생이 실습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등 실습교육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조치근거 : ①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1. 신분상 조치 다. 주의, 2. 행정상 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 통 보

일 련 번 호      1-18-07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 련 자 ( 소 속 기 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상동)

제 목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 시기 불합리

내 용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안전보건 석사학위 과정(이하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라 한다)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재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도 추진방침 및 운영대학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산업안전보건계약학과 추진방침 및 운영대학**

구 분	내 용
추진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기회 제공</li> <li>- 2017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 등 4개 대학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 2018년 장학금 지원(1인당 6,600 천 원)</li> </ul>
운영대학	-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

교육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운영지침」(제정 2014.06.11., 일부개정 2017.05.16.)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5조(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계약학과 주관대학 업무처리 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주요 일간지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신규 주관대학 모집 공고 ( <a href="http://edu.kosha.or.kr">http://edu.kosha.or.kr</a> )	교육원
↓		
신청·접수	● 신규 주관대학의 참여 신청서 제출 및 접수	대학 → 교육원
↓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대학 현장실사	교육원 → 대학
↓		
심의	● 신청대학 대면평가 실시 및 주관대학 선정	교육원 → 대학
↓		
협약	● 주관대학-관리기관 간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주관대학 → 교육원
↓		
학생모집	● 계약학과 입학생 모집 및 선발	기업 ↔ 주관대학
↓		
3자 계약	● 기업대표-근로자-대학 간 3자 계약 체결	기업대표-대학-근로자
↓		
3자 계약서 제출	● 3자 계약서 제출	주관대학 → 교육원
↓		
학과운영	●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	주관대학
↓		
운영점검	● 매학기 학과운영의 적절성 점검	교육원 → 주관대학
↓		
실적보고	● 매학기 학과운영실적 보고	주관대학 → 교육원
↓		
성과평가	● 전년도 학과운영에 관한 성과평가	교육원 → 주관대학
↓		
사업비 정산	● 전년도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교육원 → 주관대학

2017년도 교육원에서 수행한 계약학과 업무처리현황을 확인해보니, ☆☆대학교 등 9개 대학교에서 참여신청서를 제출(2017.04.25.)하였으며, 현장실태조사 및 심의(대면평가) 결과(2017.06.07.)를 ○○대학교 등 5개 대학교에 알려주었다.

하지만, ◎◎대에서 학생모집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관대학 포기통보’ (○○부-597, 2017.07.24.)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이유를 살펴보니 선정일(2017.06.07.)부터 학생공모안내, 선발, 등록 등 학생모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시기의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산업안전보건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시기를 학생모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라. 통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 통 보

일 련 번 호            1-18-08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련자(소속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상동)

제 목                    안전보건교육훈련 경진대회우수강사 활용 미흡

내 용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는 매년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우수교안 발표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우수외부강사를 발굴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추진방침은 다음 [표1]와 같다.

【표1】 추진방침

구 분	내 용
추진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진대회 결과 우수교안은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교육원 홈페이지 게시</li> <li>- 우수강사는 교육원에서 외래강사로 활용하고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홍보</li> <li>- 사회 이슈나 국민에게 필요한 KEY 메시지를 세미나 주제로 선정</li> <li>-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주, 노동자, 재해예방단체 등 사회 각 주체 참여토록 홍보</li> </ul>

하지만, 최근 3년간(‘16년 ~ 18년) 안전보건교육훈련 경진대회 수상자의 외래 강사 활용실적을 확인한 결과 수상자 17명 중 1명만을 외래강사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표2]

경진대회를 통하여 발굴한 우수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수외래강사의 활용빈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표2】 최근 3년간 안전보건교육훈련 경진대회 수상자 활용현황**

구 분	안전보건교육훈련 경진대회 수상자의 외래강사 활용현황
소속(성명)	○○건설(A)[2017년 대상수상자]
외래강사 실적	- 과정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직무교육(보수교육)(인천) - 일시: 2018.01.25., 2018.09.12., 2018.11.29.(3회)
	- '18년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 발표(20분)

**관계기관 의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안전보건교육훈련 경진대회 수상자의 외래강사 활용빈도를 높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교육훈련 경진대회 수상자의 외래강사 활용 빈도를 높이기 바랍니다.(통보)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라. 통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 통 보

일 련 번 호            1-18-09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련자(소속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상동)

제 목                    이러닝교육시스템 접근관리 불합리

내 용

우리 공단은 안전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러닝센터, 직무교육센터 및 집체교육과 관련된 교육관리시스템을 각각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교육관리시스템 비교

구분	이러닝센터	직무교육센터	교육원/집체 교육
주체	교육원 ○○부	교육원 ○○부	교육원 ○○부
주소	safetyedu.net	dutycenter.net	edu.kosha.or.kr
대상	관리감독자, 일반인 등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관리감독자, 전문기관 종사자 등
구분	인터넷교육 운영	인터넷교육 운영	교육원 집체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리	학습지원시스템(LMS) ※ 별도 시스템 구축	학습지원시스템(LMS) ※ 별도 시스템 구축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CMS) ※ 그룹웨어 등 공단 시스템과 연동
회원수	924,288명	201,997명	193,124명

가. 교육관리시스템 회원정보 통합 필요

이러닝센터는 '01년부터 운영하여 현재까지 924,288명, 직무교육센터는 '09년부터

운영하여 현재까지 201,997명, 집체교육은 '88년부터 운영하여 193,124명의 회원(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전문기관종사자, 일반인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18년 사업계획에 따라 이러닝센터와 직무교육센터에서 중복되는 회원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중인 이러닝과 직무교육의 회원 개인정보를 비교해 본 결과 아래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이디와 인증정보 Key값을 기준으로 볼 때, 인증정보가 다르고 아이디만 같은 경우(타인)는 128명(0.89%)이며, 아이디 또는 인증정보가 같은 회원 중 동일인 이거나 동일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2,558명(17.72%)이고, 아이디만 같은 경우는(확인인증 필요) 11,747명(81.39%)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2] 이러닝과 직무교육시스템 인증정보 비교

아이디	인증정보	건수	비고
같음	다름	128	타인
같음	같음	1,465	동일인
다름	같음	1,093	동일인(추정)
같음	이러닝/직무교육 정보없음	2,802	확인인증 필요
같음	이러닝 정보없음	8,750	확인인증 필요
같음	직무교육 정보없음	195	확인인증 필요
계		<b>14,433</b>	

따라서, 집합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아이디가 같거나 인증정보가 같은 회원 중 약 5,423(32.14%)의 동일인이 중복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시스템별 회원정보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수료현황이 분산되어 있고 동일인의 같은 아이디가 누적되고 있다. 그리고, 각 시스템별로 수강신청 및 수료이력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원에게 중복가입 및 개별 수료이력관리 등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관리시스템 회원정보를 통합 하여야 마땅하다.

## 나. url주소 통합 필요

또한, 각각의 교육관리시스템은 사용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url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자원 위치 지정자란 뜻으로 문자화된 인터넷 주소를 말함)를 각각 운영(이러닝센터 : safetyedu.net, 직무교육센터 : dutycenter.net, 집체교육 : edu.kosha.or.kr)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다른 url주소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사용자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접근 편의성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url주소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안전교육원 ○○부에서는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교육관리시스템의 회원관리를 일원화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교육관리시스템의 회원정보와 url주소를 통합하여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 조치 라. 통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일련번호	1-18-10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련자(소속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상동)
제목	이러닝콘텐츠 권리보호조치 미흡
내용	

우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의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보건활동을 사업장에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콘텐츠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업장에 보급하고 있다.

## 가.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이러닝콘텐츠 보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8조(재가공 및 전매 금지)에 따르면, 교육원장은 이용자가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가공, 대여, 양도 또는 전매 할 수 없도록 침해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단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확인해 본 결과 화면캡처 하거나 동영상으로 화면복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 임의로 복사된 콘텐츠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할 수 없으므로 콘텐츠 저작권 및 그 밖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하여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마땅하다.

## 나. 콘텐츠 폐기·삭제 등의 관리 필요

지침 제12조(콘텐츠 폐기·삭제 확인서 제출)에 따르면, 관련 지침은 2018. 03. 22. 에 교육원 2018-01호에 따라 이러닝콘텐츠를 제공받은 기관 및 사업장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 후 콘텐츠 폐기·삭제 확인서를 교육원으로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개정 하였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이러닝 콘텐츠의 폐기·삭제시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콘텐츠의 불법적인 유출을 막을 수 없고, 기간이 경과한 콘텐츠를 관리 할 수 없어 저작권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닝 콘텐츠의 폐기·삭제시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는 부족하므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솔루션 도입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이러닝콘텐츠가 안전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이러닝콘텐츠 저작권 및 그 밖의 권리 보호와 콘텐츠 폐기·삭제 시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솔루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닝 콘텐츠의 안전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 조치 라. 통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경고요구

일련번호 1-18-11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련자(소속기관) ○급 A(산업안전보건교육원 ○○부)  
○급 B(산업안전보건교육원 ○○부)

제목 노트북 부품교체 및 외부반출 절차 부적정

내용

공단 「계약사무규칙」 제54조(견적에 따른 가격결정 등) 제7항에 따라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수리) 시 해당 물품 구매(수리)의 적정성(가격, 업체, 품목 등) 검토를 위해 계약담당자가 견적서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고,

공단 「정보보안 관리규칙」 제45조(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및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제9조(정보시스템 외부반출시 보안조치)에 따라 노트북 등 저장매체가 포함됨 정보시스템 수리 등을 외부에 의뢰할 때에는 민감자료나 비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저장된 자료의 확인 등 정보보안담당자(책임자)의 사전 통제(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부는 계약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실습용 노트북 15대의 성능향상 작업(추정가격 2,770천원)을 위하여 2018년 7월 중 노트북 사용·운영자가 직접 외부 전산업체에 의뢰·반출하여 아래 표와 같이 내장 하드디스크\* 및 메인보드를 교체하고 메모리를 추가함으로써 구매의 적정성과 민감·비밀자료 저장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 받지 못했다.

또한, 8월 중 작업이 완료되고 2,770천원의 대금 청구를 받았으나, 공단 계

약사무규칙에 따른 1회 지급요청 한도(부가세 포함 1,100천원)를 초과하여 3회 분할(2018.10.16., 10.23., 11.21.)하여 지급을 요청하였다.

\* 상기 교체된 하드디스크 확인결과 민감자료나 비밀자료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육자료 등 공개자료만 저장되어 있었음.

**【표】 ○○부 실습용 노트북 부품 교체 및 추가 내역**

(단위 : 대, 천원)

연번	수리 교체 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2,770	
1	SSD 120GB 장착	15	77	1,155	하드디스크 교체
2	DDR 4GB 메모리 추가	14	55	770	추가
3	운영체제 설치 공임	15	33	495	재설치
4	메인보드 교체	1	350	350	교체

※ 노트북 사용자 및 수량 : A 7대, B 8대

**관계기관 의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향후에는 물품구매 및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외부반출 시 「계약사무규칙」 과 「정보보안 관리규칙」 등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처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계약사무규칙」 및 「정보보안 관리규칙」 등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경고)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1. 신분상 조치 나. 경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 시 정(회수) 요 구

일련번호	1-18-12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련자(소속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상 동)
제목	외부강의 여비 중 일비·식비 이중 수령
내용	

공단은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강의, 회의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임직원 행동강령”이라고 한다)」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서 정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3’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1시간 초과인 경우 60만원)으로 하고,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임직원이 공단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공단 「여비규칙」의 기준 내에서 외부기관이 실비수준으로 제공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Q&A 사례에 따르면,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비의 경우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은 외부강의등 시 요청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제공받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일비 등 명목에 관계없이 여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아서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교육원 ○급 B는 2018년도에 요청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한 외부강의등 7건 중 4건에 대해 여비지급 요청 시 일비와 식비 등의 여비를 삭감하였으나, 나머지 3건은 일비와 식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요청하여 총 120천원의 여비(일비 및 식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았다.

**【표】 외부강의등 여비 중복지급 현황**

성명	소속	직급	외부강의등 일자	사례금			공단지급 여비
				계	대가	여비	
계			-	-	-	-	120,000원
B	○○실	○○직 ○급	'18.1.05.	307,000원	200,000원	107,000원	40,000원
			'18.9.10.	457,000원	350,000원	107,000원	40,000원
			'18.9.28.	457,000원	350,000원	107,000원	40,000원

\* 자료 : 교육원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관련자는 이중으로 수령한 일비와 식비 120천원을 즉시 반환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관련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여비 120천원을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회수)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 조치 가. 시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